

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제29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홍O우	'98.8.13.	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8번길 35-10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로 반송

4. 공고기간: 2026.7.10. ~ 2026.7.25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 효정(Tel. 042-480-3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